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조세인식 분석

Analysis of the Tax Consciousness of a Taxpayer and a Tax Agent

김진섭

부산대학교 경영학부

Jin-Sep Kim(kjinsep@pnu.ac.kr)

요약

본 연구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조세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세무대리인과 납세자간의 조세인식에는 일부 분석대상변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와 세무대리인간의 조세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고 조세교육 및 조세제도에 대한 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 중심어 : | 조세인식 | 세무대리인 | 납세자 | 조세부담감 | 조세공평성 |

Abstract

To examine whether there are any differences between the consciousness of a taxpayer and that of a tax agent, this study has been analyzed and performed by using the questionnair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variable of analytical objects in the tax consciousness of a taxpayer and a tax agent.

The political alternative to settle the difference in the tax consciousness of a taxpayer and a tax agent and increase the fairness of tax education and system.

■ Keyword : | Tax Consciousness | Tax Agent | Taxpayer | Tax | Fair Taxation |

I. 서 론

납세자들의 조세의식에 관한 문제는 많은 학자들과 조세정책의 주체인 정부에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세의식은 납세자들의 조세회피나 조세포탈 등의 조세저항, 납세성실성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세무조사의 강화, 벌금·처벌과 같은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제재 및 조세교육 등을 통한 납세자의 인식과 태도를 개선시키는 방법 등의 조세정책이 강구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세법은 납세자의 일상생활 및 도덕적 행위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행동적 효과보다는 규범적인 동기 또는 특정 이해집단의 편의에 따라 제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납세자들은 세법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어 조세저항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세법이 제정되기 전에 발생될 수 있는 행동적 효과를 신중히 고려하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성실한 납세를 원만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

* 본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접수번호 : #080916-002

접수일자 : 2008년 09월 16일

심사완료일 : 2008년 10월 09일

교신저자 : 김진섭, e-mail : kjinsep@pnu.ac.kr

우에는 그 원인을 예측·분석하여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납세자들 간의 조세인식에 대한 연구,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나 그 차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논문은 납세자들이 갖는 불건전한 납세인식을 없애고, 건전한 납세풍토 및 납세도의를 조성할 수 있는 조세인식의 발전 및 제고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한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간의 조세인식에 차이가 있는지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조세인식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설문지를 통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조세인식에 대한 차이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검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할 수 있도록 조세정책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조세의식이 한 나라의 조세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변수로 간주되기 시작한 것은 행태적 접근법의 유용성이 확인되기 시작한 이후부터였다.

조세인식(tax consciousness)이란 납세자들이 조세 일반에 대하여 갖는 총체적인 의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조세를 부담하고 정부로부터 재정지출의 편익을 받으며 생활하는 가운데 형성된 심적 현상으로서 세정당국이나 조세법규 및 조세작용에 대한 가치관·사고방식·행동양식을 모두 포함한다.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조세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본 논문을 유도하기 위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전태영(1990)은 실험실 기법 중 현장실험을 통하여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조세회피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고, 조세회피 행위자에게 규제가 행해질 때, 규제에 대한 납세자의 반응을 연구하고, 조세회피

규제방안의 한 가지인 벌칙의 적절한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소득수준에 관해서는 납세자들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조세회피성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율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이 높은 상황의 납세자는 소득세율이 낮은 상황의 납세자에 비하여 높은 조세회피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은 감소하고, 규제에 대한 납세자의 태도는 수용적이며, 사람들은 정부의 신뢰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조세회피에 대한 벌칙을 높게 부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추가조사사항 중에서는 먼저 납세자들은 세무행정이 고소득자를 적절히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낮아졌고,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많이 시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조세회피 성향은 높았다[6].

이종환(1992)은 조세회피에 관한 기존의 논문에서 제시된 요인에 근거하여 조세회피 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설문조사 방법으로 조세회피에 대한 생각, 동기, 행위 등을 조사하여 조세회피의 상황 및 관련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를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세율의 인하, 적발확률의 증가, 가산세율의 증가, 재정지출의 공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분석하였다[5].

신형환(1993)은 조세회피 관련요소 중에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사회현상을 고려하여 8개 요소(세무행정의 공정성, 실제소득금액, 세율, 연령, 교육수준, 조세회피에 대한 윤리적 태도, 기장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비율, 조세를 회피하는 기장의무자의 비율)에 따라 조세전문가가 판단하는 종합소득세 기장의무자인 납세자의 조세회피율(tax evasion rate : TER)과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실험실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조세전문가가 판단하는 납세자의 조세회피율에 영향을 미친 실험변수로는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평균소득세율이 있었으며, 둘째, 세무행정의 공정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경우에 납세자들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추세가 감소하였다. 셋째, 조세회피행위가 많으면 세무조사의 비율을 증가시켜 조세회피를 억제 할 수 있다. 넷째, 세법을 이해하기 쉽게 입법화하고, 과

세표준과 세율을 보다 현실화하여 납세자 스스로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3].

유시영(1993)은 사업소득자의 조세회피행동을 실험 연구방법에 의하여 연구하였다. 위의 연구들과 다른 점은 동료집단의 조세회피 정도를 관찰했다는 점이다. 분석결과 첫째, 누진세율에 의하여 조세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조세회피 행동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율과 조세회피 행동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어 세율이 높아지면 조세회피 행동도 증가한다. 셋째, 적발확률을 높이면 납세자의 조세회피 행동은 감소한다. 넷째, 가산세율을 증가시키면 납세자의 조세회피 행동은 감소한다. 다섯째, 조세회피 의사결정에 있어서 적발확률과 가산세율의 의사결정 변수로서의 상대적 중요성은 적발확률이 가산세율보다 커졌다[4].

변용환(1995)은 조세형평성을 납세성실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식하였다. 그는 상대적 형평성이란 기보다는 세분화된 개념을 도입하여 조세구조의 불형평성이 납세성실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납세기피기회의 차이로 인한 납세자의 상대적 입장 및 납세기피행위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불형평 상태에 있는 여러 종류의 조세구조를 제시하였다[2].

권영모(1997)는 사회경제적 여건 속에서 납세성실도를 제고시키는 세법의 입안을 위해서는 조세공평성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연구결과로는 납세자들 간에 공평성 인식의 정도는 다르나 공평성 인식의 정도가 납세의지나 회피의지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며, 과세구조에 대하여 보다 불공평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은 세액이 상대적으로 불공평하다고 인식하며,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이 세금의 양에 대하여 가장 불공평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

Hite & Roberts(1992)는 개정세법 체계를 단순화시켜 세법체계가 보다 공평해졌다는 납세자의 신뢰가 법에 대한 납세자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8].

Christian et al(1994)은 세법 복잡성과 공평성에 대한 인식이 조세교육의 증가를 유발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약간의 복잡성은 불평등한 취취나 남용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았다[7].

III. 연구 설계

1. 표본의 선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설문은 납세경험이 있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업무를 하고 있는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 추출법을 사용하였다. 세무대리인과 납세자에 대한 지역제한은 두지 않았으나 주로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설문을 행하였다. 설문지는 납세자에게 300부, 세무대리인에게 150부의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배부된 설문지는 납세자 86부, 세무대리인 42부가 회수되었다.

설문지는 납세자용 설문지와 세무대리인용 설문지로 구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의 기본 사항인 설문 응답자의 특성과 각 항목별 조세인식으로 구성하였으며, 기본 특성은 총 5문항으로서,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연간수입금액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세인식에 대하여는 각 변수별로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세무대리인의 경우 기본 사항인 설문 응답자의 특성인 성별, 자격, 연령, 경력, 학력 등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로 납세자의 조세인식과 관련하여 각 변수별로 2개씩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변수의 선정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변수로는 조세제도의 공평성, 조세지출로 인한 혜택, 정부의 지출,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식, 탈세적발확률, 세무조사, 조세부담감에 대한 조세인식을 선정하였다.

변수의 선정은 선행연구에서 납세자들간의 조세회피 성향 등 차이분석시 사용되었던 것으로 조세제도의 환경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3. 가설의 설정

납세자의 조세인식의 경우 납세자간 조세인식도는 인구통계학적 측면, 제도적 측면 등에서 많은 연구가 있었고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무대리인의 경우 고객화보를 위하여 납세자들의 절세 및 조세회피를 도와주고 있으며,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공격적인 성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제도를 더 잘 알고 있는 세무대리인은 그렇지 못한 납세자들을 대신하여 세무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조세인식 및 기초적인 세무업무를 인지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세무대리인과 납세자간에 조세제도 인식 등의 차이가 발생하여 세무대리인이 국가와 납세자의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간의 조세인식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이 전체적인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조세인식에는 차이가 없다.

<1-1>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은 조세제도의 공평성 인식에서 차이가 없다.

<1-2>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은 조세지출로 인한 혜택 인식에서 차이가 없다.

<1-3>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은 정부의 지출 인식에서 차이가 없다.

<1-4>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없다.

<1-5>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은 탈세적발학률 인식에서 차이가 없다.

<1-6>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은 세무조사 인식에서 차이가 없다.

<1-7>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은 조세부담감에 대한 조세인식에서 차이가 없다.

IV. 실증분석

1. 설문지에 대한 신뢰성 분석

본 설문지의 구성에 대한 신뢰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신뢰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의 [표 1]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본으로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설문지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총 128부의 설문지를 통하여 7개의 설문항목에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값은 52.6812(p값 0.0000)이고, Cronbach's Alpha값은 0.7321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이 계수가 0.6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신뢰성분석

	평균	표준편차	Cronbach's Alpha
조세제도의 공평성	2.8212	.9624	.7861
조세지출로 인한 혜택	2.9345	.9152	.7172
정부의 지출	3.7325	.8869	.6699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식	2.7189	.91286	.7196
탈세적발학률	3.6354	.9133	.7085
세무조사	3.2958	.9342	.7293
조세부담감에 대한 인식	3.2844	.9411	.7725
F값	52.6812	p값	0.0000
Alpha	0.7321	Standardized item alpha	0.7389

2. 가설의 검증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조세인식에 대한 차이 연구를 위한 선정변수들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1 조세제도의 공평성

표 2. 조세제도의 공평성

구분	평균	분산	t-값	p값
납세자	2.1084	0.732		
세무대리인	1.9148	0.123	1.8097	0.0364**

* p < 0.01, ** p < 0.05

조세제도의 공평성에 대하여 납세자와 세무대리인간에는 [표 2]와 같이 유의확률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의 경우 조세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고 여기고 있으나, 납세자들은 조세에 대하여 공동체 비용의 분담이며 민주시민의 궁지와 보

람으로 느끼는 긍정적인 사고보다는 어쩔 수 없이 납부 하여야 하는 의무적 부담이고 필요악으로 느끼는 부정적 사고가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세무대리인은 납세자들의 상대적 부담감에 대하여 많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납세자 스스로가 느끼는 상대적 부담감보다는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특성, 세원노출의 용이성, 정보력 등이 원인으로 인하여 납세자간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과세공평성과 납세성실도와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이 느끼는 정도를 추가 질문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68%가 과세가 공평하다고 느끼지는 않지만, 성실히 신고하는 입장이라고 답하여 과세의 공평성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인식을 하고 있으나 세무대리인 본인들의 성실신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어 세법의 체계가 어떠하든 세법을 준수하는 입장은 보여주고 있다.

1.2 조세지출로 인한 혜택

조세지출로 인한 혜택에 대하여 납세자와 세무대리 인간에는 [표 3]과 같이 유의확률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조세지출로 인한 혜택

구분	평균	분산	t-값	p값
납세자	3.2442	0.586		
세무대리인	2.0000	0.174	12.1288	0.0000*

* p < 0.01, ** p<0.05

납세자의 조세지출로 인한 혜택에 대한 추가 설문을 행한 결과 세금부담이 받는 이익보다 많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77%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정부로부터 별다른 이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정부경비의 생산성에 대하여 부정 및 불신을 하고 있다. 세금부담이나 받는 이익이 같거나 비슷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2%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조세의 납부와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이익과의 관계는 개별적 보상이나 거래적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 관계에 있는 특성이 있고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이익을 계량화하기도 어려워 조세의 환원감을 피부로 느낄 수 없는 것

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조세의 환원감에 대한 납세자의 의식은 매우 부정적인 것(세금은 내는 것만큼 손해라는 생각)으로 나타나 자발적이고도 성실한 조세의식 형성에 부담을 주고 있다.

1.3 정부지출

표 4. 정부지출

구분	평균	분산	t-값	p값
납세자	1.4884	0.864		
세무대리인	2.1489	0.999	-3.7331	0.0001*

* p < 0.01, ** p<0.05

조세지출로 인한 혜택에 대하여 납세자와 세무대리 인간에는 [표 4]와 같이 유의확률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들이 느끼는 조세의 혜택과 관련하여 납세자들의 사고와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정부가 징수한 세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금전적으로 계획이 잘 수립되고 긴요하고 적절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아주 잘못 쓰고 있다 및 헛되이 낭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납세자가 41%이고, 잘못 쓰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3%에 달하고 있다. 전체 응답자 중 74%가 국민이 내는 세금을 국가가 잘못 쓰고 있다고 응답하여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쓰고 있는 편이다가 2%로서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은 아주 극소수이었다.

1.4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식

성실납세자에 대한 조세인식에 대하여 납세자와 세무대리인간에는 [표 5]와 같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식

구분	평균	분산	t-값	p값
납세자	4.1744	0.710		
세무대리인	3.8936	2.966	1.0510	0.1488

* p < 0.01, ** p<0.05

일반 납세자들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다른 납

세자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추가 설문을 한 결과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공직 선거'에 출마한다면 적극 지지하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47%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로 사귀거나 사업상 거래관계를 맺고 싶다고 응답한 납세자는 18%로 전체 응답자 중 65%가 상당히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당국은 다양한 모델에 의한 성실 납세자를 적극 발굴하여 세제와 세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우대조치를 함으로서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1.5 탈세적발률

탈세적발률에 대한 조세인식에 있어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간에는 표 6과 같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탈세적발률

구분	평균	분산	t-값	p값
납세자	2.0814	1.652	0.4605	0.3229
세무대리인	2.0000	0.565		

* p < 0.01, ** p<0.05

탈세의 난이도와 탈세후의 적발률은 조세의식 형성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납세자의 탈세의 적발률 인지도는 보통이상으로 적발되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 전체 응답자 중 일부만 적발된다고 답한 응답자가 67%로 나타났으며 절반 이상 적발된다가 7%로 타났다. 대부분 국민들이 느끼는 세무조사를 통한 탈세자들에 대한 적발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성실탈세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좀 더 탈세자에 대한 적발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행정능력 및 기술이 시급히 요구된다.

탈세를 행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해야 하는지를 일반 납세자들에게 추가 질문을 하였다.

탈세를 행한 사람들에 대하여 탈세액의 2~3배에 해당하는 벌과금을 부과하여 한다는 응답자가 48%로 제일 많았다. 이는 탈세는 국고에 손실을 초래한 재정적 범죄이므로 재산형을 과하여 불법으로 취득한 이득금액 이상을 회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징역형

으로 답한 응답자는 12%로 나타났다.

탈세를 행한 사람들에 대하여 세무대리인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다.

세무대리인의 경우 탈세를 행한 사람들에 대한 제재는 탈세를 행한 사람들에 대하여 탈세액의 2~3배에 해당하는 벌과금을 부과하여 한다는 응답이 50%에 달했으며,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불과 5%밖에 되지 않았다. 세무대리인의 경우 비교적 금융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납세자집단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탈세에 대한 적발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무대리인이 느끼는 세무조사에 의한 탈세의 적발률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적발률이 낮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만 적발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중 70%에 달했으며, 절반 정도 및 그 이하라고 답한 응답자는 8%로 나타났다.

1.6 세무조사

표 7. 세무조사

구분	평균	분산	t-값	p값
납세자	2.9529	0.734	-3.5932	0.0002*
세무대리인	3.5531	0.904		

* p < 0.01, ** p<0.05

세무조사에 대한 조세인식에 있어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간에는 [표 7]과 같이 유의화를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대리인들이 세무조사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 세무대리인중 72%가 현재의 세무조사의 강도가 까다롭다고 답하였으며, 이 중 매우 철저하고 까다로웠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19%였다. 국가에서 행하는 세무조사의 빈도에 대해 느끼는 정도는 60%정도가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시각을 나타냈다.

세무조사와 신고성실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추가 설문을 하였으며, 잣은 세무조사는 납세자와 세무당국과의 신뢰관계를 저해하여 오히려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8%에 달하여 세무조사가 신고성실도

에 영향을 미치며 너무 잦은 세무조사는 오히려 불성실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납세풍토로 보아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가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4%로 나타나 마찬가지로 세무조사가 성실신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조세부담감에 대한 조세인식

조세부담감에 대한 조세인식 대한 조세인식에 있어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간에는 [표 8]과 같이 유의확률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조세부담감에 대한 조세인식

구분	평균	분산	t-값	p값
납세자	2.4186	2.4109		
세무대리인	2.7872	0.8668	-1.7099	0.0448**

* p < 0.01, ** p<0.05

현행 세금부담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감에 대하여 납세자들은 좀 많은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48%에 달하고 있으며, 상당히 많다고 응답한 납세자도 28%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세금의 부담이 다른 사람보다 많다고 느낀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75%에 달하고 있어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세금부담이 많다고 느끼고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응답자 중에서 그 원인이 세법이 불공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가 41%이며, 다른 사람들이 탈세를 하기 때문에가 37%였다. 이는 세법에 대한 불만과 다른 납세자들 특히 소위 가진 자의 행위에 대한 박탈감 또는 소외감에서 오는 불만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건전한 조세의식 형성을 위해서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이 유지될 수 있는 세제와 세정의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세무대리인은 본인이 대리하는 납세자들이 다른 지역의 납세자들과 비교해서 조세부담감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인원 중 55%가 많다고 답하였으며, 아주 적다고 답한 응답자는 없다.

납세자가 다른 지역의 납세자와 비교하여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이유로서 많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60% 가량이 지역경제규모는 적은데, 예산배정이 많기 때문이라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탈세를 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0%로 나타났다.

납세자들이 많다고 느끼는 세금의 부담감에 대한 원인으로 가장 많이 답한 응답항목은 지역적 협소성, 소속공무원의 근속 근무 등으로 세원이 쉽게 노출되고 있다가 61%에 달하고 있어 세원노출의 용이성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지역적 특성 때문이라는 응답은 20%였다. 이는 주로 지역의 협소성 및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의 납세자와 차이가 발생한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간에 조세공평성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3. 연구결과를 통한 종합적 검토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태도(인지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조세의식의 형성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세금을 납부하거나 각종 보도매체를 통하여 경험적으로 형성되어진 것이 대부분이며, 소극적 부정적 조세의식은 조세의 본질이나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데에 기인된 것이다. 세금은 곧 국력이며 국가발전의 원천이고 나아가 분배적 정의의 실현 수단이라는 공정적 조세관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 납세자의 올바른 조세관 확립을 위해서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세금교육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에 의하여 납세홍보와 세금교육이 지속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조세당국은 제도적 및 행정적으로 납세자들의 조세의 공평성 및 조세지출로 인한 혜택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납세자들은 조세의 공평성 등에서 부정적이며 건전한 조세의식 형성에 가장 저해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들 대부분은 각자의 소득이 재산 또는 국가로부터 받는 이익에 비하여 훨씬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부담감이 클 뿐만 아니라 항상 같은 처지의 다른 사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상대적 불평등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조세의식은 조세제도 자체의 원천적인 불공평에서 오는 제도적 요인과 세무행정의 불공정한 집행에서 오는 행정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납세자들은 세출예산의 공정성이나 효율성에 대하여도 불만이 팽배되어 있다. 이는 세입예산을 편성·집행하는 행정부, 이를 심의·결산하는 입법부 등에 대한 정치적 불신도 있을 수 있고, 예산편성의 지역적 편차와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의 우선순위 부당, 공공부문의 방만한 조직운영 등 큰 것에서부터 공공기관의 해외여행비, 관공비 등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감시와 불만의 대상이다. 특히 각종 행정정보의 공개와 시민단체의 예산감시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하여 공표됨으로써 납세자들의 세출예산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고 세출예산에 대한 거부감은 결국 세입예산에 대한 거부감으로 연결되므로 건전한 조세의식 형성을 위해서는 공평한 세부담의 실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세출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하여도 만족감과 환원감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납세성실도에 따른 적절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납세자들은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많은 지지도와 호감도를 가지고 있어 기본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조세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진다. 조세당국으로서는 합리적인 모델에 의한 성실납세자를 적극 발굴하여 세제와 세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폭넓은 우대조치를 함으로서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탈세한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납세자들은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신의 탈세에 대하여도 상당한 자제력을 가지고 있어 건전한 조세의식 형성에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세당국은 사전적으로는 제도적인 탈세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는 탈세에 대한 적발확률을 높일 수 있는 행정능력과 기술적 수단을 강구하여 탈세심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탈세는 반드시 적발되며, 탈세에 의하여 얻은 불법소득

은 그 이상으로 환수함과 동시에 법적 사회적 책임도 물음으로서 조세정의를 통한 사회정의 실현이 있어야 조세의식도 향상될 것이다. 납세성실도와 세무조사와의 관계에 대한 결과 우리나라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의 빈도는 자주 받지도 덜 받지도 않는 중간 수준이었으나 세무조사의 강도는 좀 까다롭고 철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잦은 세무조사는 납세자와 세무당국 간의 신뢰관계를 해치어 오히려 신고성실도 제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것이 다수의견이었다. 세무조사가 본래의 목적대로 납세성실도 제고의 수단성을 갖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자는 신고성실도에 따라 소수 엄선함으로서 객관성과 효율성을 갖추어야 하고, 충분한 조사기술로 엄격하게 실시되어야 하며, 그 조사결과는 공정하게 처리됨으로서 세무조사의 신뢰도를 제고시켜야 하며 세무조사가 세무행정목적 이외의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납세자와 세무대리인간에 조세인식에 차이가 있는지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조세의식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이라는 기본적 태도는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았으나 실체적 행동에서는 부정적인 조세의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납세자의 이러한 이중적 조세의식은 세금이 개별적 보상이 없는 금전적 부담이라는 조세가 갖고 있는 일반적 특성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납세자의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대한 기본적 이해의 부족과 제도적 요인에서 오는 조세부담의 불공평감이 주된 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행정적으로도 납세성실도에 따른 차별적 관리수단이 미흡하며 세무행정의 공평성과 민주성 제고 노력이 부족하고 세무공무원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조세의식 상황에서 납세자와의 마찰없이 증대되는 재정수입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는 제2의 심리적 세원인 납세자의 건전한 조세의식 제고가 시급히

요구되며 이를 위한 제도적 행정적 개선방안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자와 세무대리인간의 조세인식 중 조세지출로 인한 혜택, 정부지출, 세무조사에서 유의화를 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납세자와 세무대리인간의 조세인식 중 조세제도의 공평성, 조세부담감에 대한 조세인식에서 유의화를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납세자와 세무대리인간에는 불성실납세자와 탈세적발화률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전한 조세의식을 효과적으로 제고시키고 세무행정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는 오늘날의 세무행정의 이념은 공평성과 민주성의 확보에 두어야 한다. 세무공무원의 의식 및 태도와 납세자의 조세의식은 상호작용한다. 따라서 조세에 관한 두 당사자는 상호신뢰 속에 신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히, 세무공무원은 공평과세에 대한 사회적 정의감과 공복으로서의 친절한 자세는 물론 보다 높은 척도의 청렴성을 갖출 수 있는 의식개혁이 요구된다.

이후 납세자와 세무공무원간에 조세인식의 차이가 있는지의 연구를 행할 필요가 있다.

[6] 전태영,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7] C. W. Christian, G. Sanjay, G. J. Weber, and W. Eugene, "The Relation between the Use of Tax Preparers and Taxpayers Prepayment Position,"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6, 1, pp.17-40, 1994.

[8] P. A. Hite and M. L. Roberts, "An Analysis of Tax Reform based on Taxpayer's Perceptions of Fairness and Self-Interest," Advances in Taxation 3, pp.115-138, 1992.

저자 소개

김 진 섭(Jin-Sep Kim)

정회원



- 1997년 2월 : 한남대학교 회계학과(경영학박사)
- 1998년 2월 ~ 2006년 2월 : 밀양대학교 회계정보학과 교수
- 2006년 3월 ~ 현재 : 부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관심분야> : 재무회계, 세무회계

참고 문헌

- [1] 권영모, “조세공평성과 납세의지의 관계에 관한 상황적 연구”, 회계정보연구, 제8권, 1997.
- [2] 변용환, “조세공평성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기준 : 다차원 모형을 이용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3] 신형환, “조세회피와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4] 유시영, “조세회피 의사결정요소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5] 이종환,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